

[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 투자설명서 정정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p>&lt;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&gt;</p>	<p>(삭제)</p>	<p>18.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을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익자가 보유 한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즉, 신탁계 약서 제 3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수 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(평 가금액)가 500 만원 이상을 유지하 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 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 를 청구할 수 있으며, 500 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 합니다.</p>	<p>-</p>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		
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 가입자격</p>	<p>(수정)</p>	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</p> <p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 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 형(AG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</p> 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 입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 용형(CG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</p>	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: 제한없음</p> <p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: 온라인 가입자</p> 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 형(AG):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이 가입</p> 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: 제한없음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: 온라인 가입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 용형(CG): 판매회사 등 투자권유 없 이 가입</p>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C-I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등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C-I): 기관투자자 등</p>
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, 500 만원 이상 투자)</p>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집합투자업자형(C-s)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서 500 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집합투자업자형(C-s)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</p>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형(C-w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형(C-w):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p>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
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
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(500 만원 이상 투자)</p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(S-P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
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가. 매입 (2) 가입자격	(삭제)	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 투자기구로서, 가입자격은 500 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 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합니다. 다만,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 수수료를 포함합니다.	-
	(수정)	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	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: 제한없음
		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	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: 온라인 가입자
	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AG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AG) 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
	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: 제한없음
		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	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: 온라인 가입자
	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CG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CG)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

	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C-I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</li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내지 제 14 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</li> <li>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</li> <li>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C-I):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</li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내지 제 14 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</li> <li>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</li> <li>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
	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, 500 만원 이상 투자)</p>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
	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집합투자업자형(C-s)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서 500 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집합투자업자형(C-s)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</p>
	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형(C-w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를 원하는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형(C-w):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를 원하는 가입자</p>
	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(C-P)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
	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Pe)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

	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 형(S-P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 (500 만원 이상 투자)</p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 형(S-P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</p>
	<p>(삭제)</p>	<p>※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 ① 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 시 계 좌별로 500 만원 이상(선취판매수수 료 포함)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. ②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(평가금액)를 500 만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 다만, 평가손 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 하여 잔고가 500 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-</p>
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환매 (5)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환매</p>	<p>(수정)</p>	<p>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탁계약서 제 3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청구 후 잔고(평가금액)가 500 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5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청구만 가능합니다.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.</p>	<p>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,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	<p>(수정)</p>	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</p> <p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 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AG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온라인 가입자</p>	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형(A): 제한없음</p> <p>수수료선취-온라인형(A-e): 온라인 가입자</p> <p>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AG)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: 제한없음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: 온라인 가입자</p>

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CG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형(CG)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</p>
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C-I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</li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내지 제 14 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</li> <li>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</li> <li>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형(C-I):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</li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내지 제 14 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</li> <li>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</li> <li>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	
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, 500 만원 이상 투자)</p>	<p>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	
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집합투자업자형(C-s)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서 500 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집합투자업자형(C-s)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</p>	
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형(C-w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p>	<p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형(C-w):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원하는 가입자</p>	

	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 (C-P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 저축계좌의 가입자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형 (C-P)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	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 Pe)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형(C- Pe)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
	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 형(S-P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 (500 만원 이상 투자)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 형(S-P)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자

[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 집합투자규약 정정대비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 3 항	(수정)	1. 종류 A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	1. 종류 A : 제한없음
		2. 종류 A-e : 500 만원 이상 투자 자 중 온라인 가입자	2. 종류 A-e : 온라인 가입자
		3. 종류 AG : 500 만원 이상 투자 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 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 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 자	3. 종류 AG 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
		4. 종류 C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	4. 종류 C : 제한없음
		5. 종류 C-e : 500 만원 이상 투자 자 중 온라인 가입자	5. 종류 C-e : 온라인 가입자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		<p>6. 종류 CG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</p>	<p>6. 종류 CG 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</p>
		<p>7. 종류 C-I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</li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내지 제 14 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</li> <li>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</li> <li>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	<p>7. 종류 C-I : 아래에 해당하는 가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</li> <li>- 법 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8 호, 제 10 호 내지 제 14 호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</li> <li>-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</li> <li>-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</li> <li>-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</li> </ul>
		<p>8. 종류 S 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, 500 만원 이상 투자)</p>	<p>8. 종류 S 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(후취판매수수료 부과)</p>
		<p>9. 종류 C-s 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서 500 만원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</p>	<p>9. 종류 C-s :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</p>
		<p>10. 종류 C-w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</p>	<p>10. 종류 C-w : 랩어카운트,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하기원하는 가입자</p>
		<p>11. 종류 C-P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	<p>11. 종류 C-P 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p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		12. 종류 C-Pe : 500 만원 이상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	12. 종류 C-Pe :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
		13. 종류 S-P 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(500 만원 이상 투자)	13. 종류 S-P :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중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제 3 조의 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	(삭제)	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로서, 가입자격은 500 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 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한다. 다만, 최초 투자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선취판매수수료를 포함한다.	-
제 3 조의 3(투자신탁의 가입조건 및 잔고유지 기준)	(삭제)	① 이 투자신탁은 최초 가입시 계좌별로 500 만원 이상(선취판매수수료 포함)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. 다만, 추가설정 금액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②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계좌의 잔고(평가금액)를 500 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. 다만, 평가손실 또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잔고가 5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.	-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4 조(수익증권의 환매)	(조의 후단 삭제)	<p>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 3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환매 청구 후 잔고(평가 금액)가 500 만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, 500 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매 청구만 가능하다.</p>	<p>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</p>